

#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# 1. 제안이유

- 조례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2조제2항 수정
  -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 수정
- 조례안 제6조제5항 수정 및 제7조제2항 삭제
  - 법률의 근거없이 조례로서 재산권 제한(기부채납) 및 권리구제의 기회를 박탈(이의제기 불가)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삭제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##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”를 “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노인복지회관은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6(구 주소 : 용평면 장평리 380번지)에 둔다.

제6조제5항 중 “원상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완료와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”를 “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</u></p> 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노인복지회관의 소재는 다음과 같다.</u>  <u>노인복지회관 평창군 평창읍 하리 157번지</u>  <u>노인복지회관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80번지</u></p> <p>제6조(위탁관리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수탁자가 노인복지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완료와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</u></p> <p>⑥ · ⑦ (생략)</p> <p>제7조(위탁관리의 정지 및 취소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사유로 군수가 위탁관리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</u></p>	<p><u>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</u></p> 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노인복지회관은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6(구 주소 : 용평면 장평리 380번지)에 둔다.</u></p> <p>제6조(위탁관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.</p> <p>⑥ ·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위탁관리의 정지 및 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조치를 할 경우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## 4. 작성자

작 성 자	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150